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93 호 2019. 9. 5.(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95호[도시계획시설(도로)조성사업 공사완료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96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97호[하천 점용 (변경)허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98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99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6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72호[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안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80호[2019년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행 공고].....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81호[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위탁의료기관 공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84호[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86호[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92호[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93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95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96호[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4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98호[울산광역시 북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99호[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li> <li>☞ 북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95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조성사업 공사완료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330호(2018. 12. 20.)호로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소2-591호선)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19년 09월 05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19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소2-591호선
  - 나. 명 칭: 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
3. 사업개요

구분	시설명(노선명)	규모			비고
		B(m)	L(m)	A(m <sup>2</sup> )	
도로	소2-591호선	7~8	L=427 (150)	1380	일부개설 ( ):금회개설구간
합 계		-	-	13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2018. 12. 18. ~ 2019. 08. 12.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 052-241-7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96호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5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9. 8.29.	2019 -14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2길 64-12	이원경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08일원	18/ 100m 변경 후 18/ 50m, 75m	2018. 6. 1. ~ 2023. 5. 31	활어도소매 업을 위한 해수인수	구경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97호

# 하천 점용 (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효성

나.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번길 13-4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오수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신천동 717-2번지

나. 면적 : 11m<sup>2</sup>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당초 : 2017. 1. 20. ~ 2019. 9. 4.

변경 : 2017. 1. 20. ~ 2021. 3. 4.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9 - 198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코리아신타(주) 대표 최익종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6블럭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 **【붙임1】** 참조

2019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붙임1】

## 1.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명칭	송정 지웰푸르지오 신축공사					송정 지웰푸르지오 신축공사					변경없음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6블럭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6블럭					변경없음
사업주체	코리아신타(주) 대표 최익중					코리아신타(주) 대표 최익중					변경없음
사업주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변경없음
대지면적	27,708.0472㎡					27,708㎡					변경 (감0.0472㎡)
건축면적	3,951.1957㎡					3,951.1957㎡					변경없음
연 면 적	64,810.4394㎡					64,810.4394㎡					변경없음
건폐율/용적률	14.26% / 169.90%					14.26% / 169.90%					변경없음
층수/동수/세대수	지하1층, 지상16~25층 / 주: 5개동, 부속: 11개동 / 420세대					지하1층, 지상16~25층 / 주: 5개동, 부속: 11개동 / 420세대					변경없음
사업규모	형별	세대수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형별	세대수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변경없음
	A	310	84.9623	25.2040	110.1663	A	310	84.9623	25.2040	110.1663	변경없음
	B	110	84.9523	25.0941	110.0664	B	110	84.9523	25.0941	110.0664	변경없음
	계	420				계	420				변경없음
부대복리시설	구 분		합 계(㎡)			구 분		합 계(㎡)			변경없음
	경비실		20.0900㎡			경비실		20.0900㎡			변경없음
	관리사무실		253.4308㎡			관리사무실		253.4308㎡			변경없음
	조경시설		9,882.81㎡(35.66%)			조경시설		10,919.83㎡(39.41%)			변경 (증1,037.02㎡)
	주차장		517대			주차장		517대			변경없음
	경로당		128.0018㎡			경로당		128.0018㎡			변경없음
	어린이집		187.6278㎡			어린이집		187.6278㎡			변경없음
	주민공동시설		585.4506㎡			주민공동시설		585.4506㎡			변경없음
	주민운동시설(외부)		530.01㎡			주민운동시설(외부)		530.01㎡			변경없음
	어린이놀이터		754.2800㎡			어린이놀이터		754.2800㎡			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		1,402.4858㎡			근린생활시설		1,402.4858㎡			변경없음
사업비	161,063,167천원					161,063,167천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7. 06. ~ 2019. 09.					2017. 06. ~ 2019. 09.					변경없음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 및 지적경계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조경계획 변경에 따른 조경면적 변경</li> <li>단위세대 창호 및 설비 등 건분주택 기준으로 변경 등</li> </ul>										

## 2.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99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5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256 외 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9.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5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86-5	2019-09-05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 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 을부여하였다.	2009-08-20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6B 6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8길 6-12	2019-09-05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 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 을부여하였다.	2004-12-27
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F6B 1L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6길 4	2019-09-05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4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117-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256	2019-09-05	울산의산업을활성화시 키자는취지로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6-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 972호

##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5.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9 ~ 2022년

지구명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43번지 일원	9,823m <sup>2</sup>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 기간	열람 장소
2019년 9월 5일 ~ 2019년 9월 19일 (14일간)	울산광역시청 지역개발과, 북구청 도시과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a> )

※ 열람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9. 9. 5. ~ 2019. 9. 19.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 개별우편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시 별도 양식은 없으며,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 주소 및 팩스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팩스번호 : 052-289-7272
-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72),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공고 제 2019-980호

## 2019년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2019년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 기 간 : 2019. 9. 17.(화) ~ 2020. 4. 30.(목)
- 장 소 : 울산시티병원 외 37개소(※전국 위탁의료기관 접종가능)  
\*\*\*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 대 상 :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2007.1.1.~2019.8.31.출생자)
- 접종백신 : 2019-2020기 권장 3가 인플루엔자 백신
  - 생후 6개월~35개월 : 0.25ml
  - 생후 36개월~만12세 : 0.5ml
- 접종일정 : 접종 횟수에 따른 사업 기간 구분
  - 2회 접종 대상 : 2019. 9. 17.(화) ~ 2020. 4. 30.(목)
  - 1회 접종 대상 : 2019. 10. 15.(화) ~ 2020. 4. 30.(목)
- 문 의 :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246, 8247)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공고 제 2019-981호

##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위탁의료기관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병·의원명	전화번호	주 소	
1	구암의원	287-7246	염포로 633	염포동 양정동
2	윤가정의학과의원	287-2300	염포로 529, 303호	
3	하나정형외과의원	287-9852	염포로 521	
4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075	염포로 601, (현대자동차회관) 2층	
5	함께하는의원	289-7046	염포로 673	
6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287-4287	화봉로 67, 4층	연암동 화봉동
7	김유홍내과의원	288-9693	화봉로 67, 2층	
8	김현경의원	287-0314	화봉로 60, 206호	
9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075	화봉로 75	
10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268-6575	화산중앙로 84, 2층	
11	울산시티병원	280-9068	산업로 1007	
12	현대연합의원	291-9800	상방로 106, 2층	
13	홍찬의소아청소년과의원	281-0756	화산6길 8, (S타워) 3층 301호, 302호	
14	김은정소아과의원	288-5510	명촌15길 10, (평창리비에르3차상가) 2층 201호	명촌동
15	이내과의원	289-1066	명촌로 85, (평창리비에르2차상가)	
16	행복한내과의원	283-2299	명촌로 85, (평창리비에르2차상가) 301동 206호	
17	21세기좋은병원	290-2100	호계로 285	호계동
18	이순일내과의원	282-7588	호계2길 7	
19	하나산부인과의원	282-8258	호계로 292	
20	열린이비인후과의원	291-2975	호계로 322	신천동
21	울산아동병원	282-7171	호계로 332-1	
22	다정의원	282-0127	매곡1로 15	매곡동
23	드림아이의원	295-0129	호계매곡1로 31, (에일린의뜰1차상가동) 1층 105호	
24	봄소아청소년과의원	286-1311	매곡1로 15, 3층	
25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281-1231	매곡로 115, 2층 202호	

26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977-1000	매산로 15, (참조은빌딩) 3층	
27	아이마음아동병원	716-5170	괴정1길 114, 3, 4, 5층	
28	웰당이진우내과의원	292-7179	매곡1로 46, (대우프라자), 208호	
29	개구쟁이소아과의원	294-7504	신답로 35, 4층	중산동 상안동
30	김영근의원	282-3770	이화5길 10, (중산동)	
31	열린소아청소년과의원	297-7733	신답로 48, (프리지아) 지상2층 204~205호	
32	코끼리이비인후과	294-8275	아진로 76, (맑은샘빌딩) 201호	
33	다사롬소아청소년과의원	246-8575	북구 달천로 9, 창성빌딩 2층 202호	천곡동
34	민사랑내과의원	292-1111	아진로 102, (그린상가) 201호	
35	새현대의원	291-3770	천곡길 169, 106동 201호	
36	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0800	천곡남로 33, (삼성코아루상가) 203호, 204호	
37	영남이비인후과의원	286-8277	가재길 87, 3층	
38	한결의원	268-8227	산하중앙2로 290, (아이스케이) 305호, 306호	산하동

※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인플루엔자(독감) 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위탁의료기관 방문 전 백신보유 여부 ☎전화문의 후 방문하세요.**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984호

## 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사 주차장 요금징수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울산광역시 복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 과태료 처분조항 삭제(안 제21조)

- 현행 : 제21조(과태료 처분) 영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변경 : 삭제

### 3.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7조 및 제19조의3
-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

###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963, 팩스 : 052)241-7969】

###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울산광역시 복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21조 및 별표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6]&lt;삭 제&gt;

## 과태료 처분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차	2차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행위를 하면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21조(과태료 처분) 영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p> <p>[별표6] 과태료 처분기준(제21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위반행위별</th> <th style="width: 20%;">적용법규</th> <th colspan="2" style="width: 50%;">과태료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법 제30조제2항제1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td> </tr> <tr> <td rowspan="2">2.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법 제30조제2항제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td> </tr> <tr> <td rowspan="2">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법 제30조제2항제4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td> </tr> </tbody> </table> <p>※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행위를 하면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p>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p>제10조의2(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p> <p>① 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p> <p>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18. 12. 31.>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8. 10.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	20만원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50만원
마.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	10만원
바.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6호	50만원
사.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만원
아.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자.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 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50만원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50만원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986호

## 울산광역시 복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 예산집행품의서 작성 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약칭 필요(안 제2조제1항)
-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추산필란 정비(별지 제1호서식)

####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3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303 팩스 : 052)241-7209】

#### 5. 기타사항

개정규칙안과 신규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건명: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협조					
매입 아래와 같이 ( 수리 ) 코자 합니다. 제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b>물 품 ( 매 입, 수 리, 제 조 ) 명 세</b>											
물품분류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명칭	수량	단 가	금 액	용 도				
계(소요예산액)											
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											
재 무 관 귀 하											

-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근 거 법 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92호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 추가(안 제25조 별표3)

- 10㎡ 이하 : 5,000원(현행 6,0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00원

나. 현수막 게시시설 수수료 조항 삭제(안 제25조 별표3)

다.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26조 별표6)

- 옥외광고사업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3. 관계법령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제20조(과태료)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과태료 부과)

####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 전화번호 : 052-241-8031, 팩스번호 : 052-241-801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광고물등</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가. ~ 다. (생략)</td> <td></td> </tr> <tr> <td>파. 현수막</td> <td></td> </tr> <tr> <td>1) <u>일반현수막</u></td> <td></td> </tr> <tr> <td>- (생략)</td> <td></td> </tr> <tr> <td>- (생략)</td> <td></td> </tr> <tr> <td>2) <u>현수막 게시시설</u></td> <td></td> </tr> <tr> <td>- <u>10㎡ 이하</u></td> <td><u>10,000원</u></td> </tr> <tr> <td>- <u>10㎡ 초과시 1㎡마다</u></td> <td><u>2,000원</u></td> </tr> <tr> <td><u>더하는 금액</u></td> <td></td> </tr> <tr> <td>(신설)</td> <td></td> </tr> </tbody> </table>	광고물등	수수료	가. ~ 다. (생략)		파. 현수막		1) <u>일반현수막</u>		- (생략)		- (생략)		2) <u>현수막 게시시설</u>		- <u>10㎡ 이하</u>	<u>10,000원</u>	- <u>10㎡ 초과시 1㎡마다</u>	<u>2,000원</u>	<u>더하는 금액</u>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광고물등</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가. ~ 다. (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파. 현수막</td> <td></td> </tr> <tr> <td>1) <u>일반현수막</u></td> <td></td> </tr> <tr> <td><u>(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u></td> <td></td> </tr> <tr> <td>- (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 (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u>(삭제)</u></td> <td></td> </tr> <tr> <td>2) <u>지정게시대</u>에 <u>표시</u></td> <td></td> </tr> <tr> <td><u>하는 현수막</u></td> <td></td> </tr> <tr> <td>- <u>10㎡ 이하</u></td> <td><u>5,000원</u></td> </tr> <tr> <td>- <u>10㎡ 초과시 1㎡마다</u></td> <td><u>1,000원</u></td> </tr> <tr> <td><u>더하는 금액</u></td> <td></td> </tr> </tbody> </table>	광고물등	수수료	가. ~ 다. (현행과 같음)		파. 현수막		1) <u>일반현수막</u>		<u>(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u>(삭제)</u>		2) <u>지정게시대</u> 에 <u>표시</u>		<u>하는 현수막</u>		- <u>10㎡ 이하</u>	<u>5,000원</u>	- <u>10㎡ 초과시 1㎡마다</u>	<u>1,000원</u>	<u>더하는 금액</u>														
광고물등	수수료																																																														
가. ~ 다. (생략)																																																															
파. 현수막																																																															
1) <u>일반현수막</u>																																																															
- (생략)																																																															
- (생략)																																																															
2) <u>현수막 게시시설</u>																																																															
- <u>10㎡ 이하</u>	<u>10,000원</u>																																																														
- <u>10㎡ 초과시 1㎡마다</u>	<u>2,000원</u>																																																														
<u>더하는 금액</u>																																																															
(신설)																																																															
광고물등	수수료																																																														
가. ~ 다. (현행과 같음)																																																															
파. 현수막																																																															
1) <u>일반현수막</u>																																																															
<u>(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u>(삭제)</u>																																																															
2) <u>지정게시대</u> 에 <u>표시</u>																																																															
<u>하는 현수막</u>																																																															
- <u>10㎡ 이하</u>	<u>5,000원</u>																																																														
- <u>10㎡ 초과시 1㎡마다</u>	<u>1,000원</u>																																																														
<u>더하는 금액</u>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행위</th> <th>근거 법조문</th> <th>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1. ~ 2. (생략)</td> <td></td> <td></td> </tr> <tr> <td>1. <u>3 법 제11조제5항 및</u></td> <td></td> <td></td> </tr> <tr> <td><u>제6항에 따른 영업소</u></td> <td><u>법 제20조</u></td> <td></td> </tr> <tr> <td><u>내 옥외광고물 관련</u></td> <td><u>제1항제3호</u></td> <td></td> </tr> <tr> <td><u>장부 등을 비치하지</u></td> <td><u>및 제4호</u></td> <td></td> </tr> <tr> <td><u>아니하였거나 등록번</u></td> <td></td> <td></td> </tr> <tr> <td><u>호 등을 표시하지 않</u></td> <td></td> <td></td> </tr> <tr> <td><u>은 경우</u></td> <td></td> <td></td> </tr> <tr> <td>2. <u>가. 연회 위반한 경우</u></td> <td></td> <td><u>80만원</u></td> </tr> <tr> <td>3. <u>나. 연회 위반한 경우</u></td> <td></td> <td><u>200만원</u></td> </tr> <tr> <td>4. <u>다. 연회 이상 위반한</u></td> <td></td> <td><u>500만원</u></td> </tr> <tr> <td><u>경우</u></td> <td></td> <td></td> </tr> <tr> <td>5. <u>4 (생략)</u></td> <td></td> <td></td> </tr> <tr> <td>6. <u>5 (생략)</u></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 2. (생략)			1. <u>3 법 제11조제5항 및</u>			<u>제6항에 따른 영업소</u>	<u>법 제20조</u>		<u>내 옥외광고물 관련</u>	<u>제1항제3호</u>		<u>장부 등을 비치하지</u>	<u>및 제4호</u>		<u>아니하였거나 등록번</u>			<u>호 등을 표시하지 않</u>			<u>은 경우</u>			2. <u>가. 연회 위반한 경우</u>		<u>80만원</u>	3. <u>나. 연회 위반한 경우</u>		<u>200만원</u>	4. <u>다. 연회 이상 위반한</u>		<u>500만원</u>	<u>경우</u>			5. <u>4 (생략)</u>			6. <u>5 (생략)</u>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행위</th> <th>근거 법조문</th> <th>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7. 1. ~ 2.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8. <u>3. (삭제)</u></td> <td></td> <td></td> </tr> <tr> <td>9. <u>3. (현행과 같음)</u></td> <td></td> <td></td> </tr> <tr> <td>10. <u>4. (현행과 같음)</u></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7. 1. ~ 2. (현행과 같음)			8. <u>3. (삭제)</u>			9. <u>3. (현행과 같음)</u>			10. <u>4. (현행과 같음)</u>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 2. (생략)																																																															
1. <u>3 법 제11조제5항 및</u>																																																															
<u>제6항에 따른 영업소</u>	<u>법 제20조</u>																																																														
<u>내 옥외광고물 관련</u>	<u>제1항제3호</u>																																																														
<u>장부 등을 비치하지</u>	<u>및 제4호</u>																																																														
<u>아니하였거나 등록번</u>																																																															
<u>호 등을 표시하지 않</u>																																																															
<u>은 경우</u>																																																															
2. <u>가. 연회 위반한 경우</u>		<u>80만원</u>																																																													
3. <u>나. 연회 위반한 경우</u>		<u>200만원</u>																																																													
4. <u>다. 연회 이상 위반한</u>		<u>500만원</u>																																																													
<u>경우</u>																																																															
5. <u>4 (생략)</u>																																																															
6. <u>5 (생략)</u>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7. 1. ~ 2. (현행과 같음)																																																															
8. <u>3. (삭제)</u>																																																															
9. <u>3. (현행과 같음)</u>																																																															
10. <u>4. (현행과 같음)</u>																																																															

<b>붙임 1</b>	<b>관계 법령</b>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3.29.]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3.29.]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6조에서 이동 <2011.10.10.>]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행정6급 박광희 ☎ 241-80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93호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게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관련 조문 정비

#### 2. 주요내용

준용규정에서 과태료 부분 삭제(안 제7조)

#### 3.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66, 팩스번호 : 052-241-78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준용규정) 점용료, <u>과태료</u>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제7조(준용규정) 점용료의 <u>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u></p>

**붙임 1****관계 법령****[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행정 8급 정덕부 241-7866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995호

##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평생교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미반환 규정이 국민권의 침해 발생가능성이 있어 미반환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센터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안 제14조제3항)
  - 사용료 원칙적 반환 불가, 과·오납의 경우 반환  
⇒ 반환 불가 규정 삭제, 과·오납의 경우 반환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규정 개정(안 제17조제1항)
  - 수강료 원칙적 반환 불가, 예시 조항에 해당될 경우 반환  
⇒ 반환불가 규정 삭제, 예시 조항에 해당될 경우 반환

### 3. 근거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학습비의 반환)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도서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과 전화 : 052)241-7282 팩스 : 052)241-7419】

### 5. 기타사항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사용신청자가 납부한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별표1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사용신청 및 허가)</p> <p>① ~ ② (생략)</p> <p>③ <u>사용신청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u> 다만,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별표1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7조(수강료의 반환)</p> <p>① <u>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14조(사용신청 및 허가)</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사용신청자가 납부한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별표1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수강료의 반환)</p> <p>① <u>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근거법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9 - 996호

##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9.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정방법 : 경쟁방법
2. 금 고 수 : 단수금고(1개)
3. 약정기간 : 3년 (2020. 1. 1 ~ 2022. 12. 31)
4.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우리 구 관내에 영업점(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의 주요 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 6. 신청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가. 공고 및 관련서류 열람

- 공고 및 열람기간 : 2019. 9. 5.(목) ~ 9. 17.(화)
- 공고장소 :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 관련서류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과(1층 민원실)

### 나. 신청(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9. 18.(수) ~ 9. 19.(목) 단, 근무시간내(09:00~18:00)
-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과 (1층 민원실)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제안서 12부(원본 1, 사본 11)
-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신청서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제안서 및 부속서류 등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7.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 금고업무 관리 능력(25점)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7점)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별표1, 별표2)

## 8. 심사·평가 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우리 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평가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심사 병행
  - ※ 면접심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한 후 공정한 평가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한 금융기관의 총점과 순위를 공개 함

##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구 금고로 지정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신청 시 제안한 금고 협력사업 등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항 준수의무를 약정 시 명시하여야 함
-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자기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며, 앞으로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0. 1. 1.부터 정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고에게 지체 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부담으로 함
- 금고운용을 위한 세입 및 자금배정시스템, 수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

## 11. 기 타

- 신청(제안)서는 우리 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확인 후 봉인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사용인감(도장)과 인감 확인서 지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별표 1]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5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3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5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 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배점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
-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라.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998호

## 울산광역시 복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음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음부즈만의 구성, 임기 등(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음부즈만의 직무, 대상기관, 결격사유 등(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마. 음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바.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안 제21조)
- 사. 운영지원(안 제22조)

3.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주민소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주소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주민소통실
- 전화번호 : 052)241-7144, 팩스번호 : 052)241-7269

6. 기타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호

## 울산광역시 복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ombudsman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복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이란 구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ombudsman의 구성) ① ombudsman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ombudsman으로 호선한다.

②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울산광역시 복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ombudsman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ombudsman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ombudsman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③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2.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제6조(직무 대상기관)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3. 구의 사무위탁 기관·단체 및 개인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민원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읍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9조(겸직금지) 읍부즈만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읍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민원인은 읍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제12조(고충민원의 각하) 읍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울산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민원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 및 조사대상기관 등에 설명요구 또는 관련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구 및 조사대상기관 등의 직원·민원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그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권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읍부즈만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읍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읍부즈만의 시정 권고 등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읍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읍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의뢰)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읍부즈만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읍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읍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999호

##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 제22조(준용) 삭제
-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 3.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53, 팩스번호 : 052-241-78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를 삭제한다.

제22조(준용)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u>&lt;삭제&gt;</u>								
제22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u>&lt;삭제&gt;</u>								
별지 제6호 서식		<u>&lt;삭제&gt;</u>								
<b>과태료 수납부</b>										
일 련 번 호	통 지 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일	독 촉 장 발 부 일	납 부 기 한		납 부 의 무 자		과 태 료 납 부 일	이 의 제 기 이 의 제 기 일	이 의 법 원 통 보 일
				당 초	독 촉	금 액 (천 원)	성 명			

**붙임 2**    **관계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